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1.04.13 (수) 10:00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4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개정(안 제3조, 안 제18조, 안 제20조)

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